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총괄과장 | 신영선

새 정부는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와 소비자 주권에 기반한 '활기찬 시장경제'의 구축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추어 선진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과 과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 운영의 큰 축을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중심에서 경쟁촉진 시책 중심으로, 그리고 사전적 규제 중심에서 시장친화적인 제도 및 법집행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력의 제고 ②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효율의 증진 ③ 중소기업의 경쟁여건 개선 ④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의 실현의 네 가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력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2008년에 글로벌 경제 환경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

가.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완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하여 우선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여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합계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 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2008년 4월 3일 현재 10개 기업집단 소속 31개사가 적용대상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직접적 사전규제를 시장의 자율감시체제로 전환하고자 한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별회사의 현황을 공시하게 한 기준의 공시제도와 달리 이해관계인이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건당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외에 공시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즉,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및 비계열 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보유)이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현재는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갖는 경우에만 증손회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공동출자법인은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주주 간 계약 등의 방법으로 합작투자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현저히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지주회사 관련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02년 이후 자산 2조 원으로 유지되어 온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5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 이 경우 현재 79개인 상호 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수(1,680개 계열사)는 41개(946개 계열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제규모 증가 등에 따라 지정대상 기업집단이 매년 크게 증가해 온 바, 대상 기업집단의 수를 2002년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집단 관리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전반 재정비

선진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및 소비자 관련 법령의 선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12개 소관 법령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도록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령 선진화 추진단’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여 법령·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경제 환경 및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없는지, 법체계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 법령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

다. 기업결합(M&A) 심사에 따른 기업 부담 최소화

현재 자산 또는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사(신고회사)가 200억 원 이상인 회사(상대회사)와 기업을 결합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 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던 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 이 경우 작년(11월 시행)의 상대회사 기준 상향 조정(30억 원→200억 원) 효과와 더불어 기업 결합 신고건수가 약 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신고기준 상향 조정으로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한 기업들의 신고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고 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대규모회사(자산 또는 매출액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 기한을 폐지하여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업 편의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기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 시 국내 시장점유율 외에 수입 증가 가능성 및 수출물량 내수 전환 가능성, 국제적 경쟁상황 등 경제적 여건들을 심층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한다.

라. 경쟁제한적인 규제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부처 소관의 경쟁제한적인 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즉, 금융, 통신, 운송 등 주요 규제산업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와 사업 활동 규제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것이다.

또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사업소로 한정하는 것과 같은 지방정부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의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2.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효율 증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유발되는 국내외 카르텔(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여 시장경제의 효율을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

가.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담합 감시 강화

먼저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하여 담합할 우려가 큰 분야를 집중 감시하여 시정할 것이다. 중점 감시 대상은 유류, 은행수수료, 학원비, 통신요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등이다. 유가점검반을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담합 여부를 밀착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시장에 피해를 야기하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흑연전극봉(2002년)과 비타민(2003년) 등 12개 외국사업자의 국제카르텔에 대해 총 1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으로도 외국 경쟁당국과의 정보 교환 및 조사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신설된 국제카르텔과의 조사역량을 제고하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신뢰도를 높여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즉, 발주기관이 담합을 인지할 때 공정위에 즉시 통보하는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조달청 및 4대 공사(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한국전력)로 제한된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모든 공공기관(323개)으로 확대하여 입찰담합 조기 적발을 위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입찰담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나. 독과점 폐해 적극 시정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즉, 석유, 이동전화 서비스, 자동차 등 독과점 업종 중 중점 감시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모니터링하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은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조사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품목의 국내외 가격 차이에 관한 조사결과와 원인분석 결과를 소비자원을 통해 공표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3. 중소기업의 경쟁여건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강화'의 핵심주체인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부당한 하도급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시정할 것이다. 상습 법위반 업체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혐의가 높은 업체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개별 관리하는 하도급거래 관련 정보를 공정위 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상시 수집할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거래 단절 등의 보복 우려로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거래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업체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상습적인 불공정거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시정할 방침이다.

4.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실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책의 이관을 계기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가. 소비자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

부처별 소비자정책을 통합·조정하여 법정부 차원의 종합 기본계획(2009~2011년)을 수립하고 동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 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과적인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소액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지방에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 집중 감시

계약불이행 등 상조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조업을 규율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회원으로부터 받은 불입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상조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시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판매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즉, 취업 알선을 미끼로 대학생 등을 유인하는 행위 및 노인 등을 기만하여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도록 정보 제공 강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구매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품에 대한 양질의 가격 및 품질 테스트 정보를 소비자단체를 통해 제공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가격비교 사이트의 소비자정보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짓가격 게시 등 허위·과장정보 제공 여부를 소비자원을 통해 수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5. 조사 및 법집행 방식의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제기되는 기업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방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직권조사 및 현장조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즉, 직권조사는 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고 경쟁제한 폐해 또는 소비자 피해 등이 큰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장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부족한 경우로 한정하고 결재권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 간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규제당국과의 중복조사를 방지할 것이다. 즉, 다른 부처와의 중복규제 분야(예, 금융, 통신, 방송 등)에 대해 MOU 체결 및 업무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중복조사를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의명령제도 도입 등 기업의 자율적 시정기회를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동의명령제도는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와의 동의하에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다. 즉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시정방안을 확정하는 제도로,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은 한미 FTA 합의 사항이기도 하다.